



즉시 배포용: 2022년 9월 2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항소부, 제4부 사업부 판사로 Mark Montour를 임명했다고 발표**

***Montour 판사, 뉴욕주 항소부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미국 원주민 대법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센트럴 및 웨스턴 뉴욕에 근무하는 뉴욕주 항소부 제4사법부에 Mark Montour 판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대법관인 Montour 판사는 뉴욕주 항소부에서 근무한 최초의 원주민 대법관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Mark Montour 판사는 사법 제도에 사려 깊은 접근을 하는 재능 있는 법조인입니다. 저는 Montour 판사를 제4부 항소부에 임명하게 되어 영광이며, 그가 이 역할을 맡은 최초의 미국 원주민 판사로서 역사를 새롭게 쓴 것을 축하드립니다."

Mark Montour 판사는 항소부 제4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주 대법관을 역임했고 2013년에 선출되었습니다. Montour 판사는 이전에 제8사법구의 행정 판사 권한대행과 제네시, 와이오밍 카운티 타운 및 빌리지 사법 재판소의 감독 판사였습니다. 그는 St. Regis Mohawk Indian Nation의 등록 회원이고 Kahnawake Kanien'keha:ka 등록부에 가입되어 판사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Montour 판사는 뉴욕주에서 주 수준의 사법 직위에 선출된 최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뉴욕주 부족 법원 위원회(New York State Tribal Courts Committee)의 의장, 뉴욕-연방-주 및 부족 법원 및 인도 국가 정의 포럼(New York-Federal-State and Tribal Courts and Indian Nations Justice Forum)의 주 진행자, 사법 윤리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Judicial Ethics) 회원입니다.

항소부 제4부 사법심사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 for the Appellate Division)는 지원서를 검토하고 수십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 지원자만이 주지사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도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무결성, 독립성, 리더십, 지성, 법적 능력, 판단, 기질 및 경험을 보여야 했습니다.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 및 사법 법령(Judiciary Law)에 따라 주지사는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선출된 사람들 중 각각의 항소부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